
V. 연금과 세제

1. 현황

가. 우리나라 연금구성 체계

우리나라의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연금체계는 1층에 최소한의 노후 생활수준 보장을 위해 전 국민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국민연금, 2층에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노후 기본적인 생활수준을 유지하기 위한 퇴직연금 그리고 3층에 노후에 여유 있는 삶을 영위하기 위한 개인연금으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우리나라의 연금체계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기로 한다.

1) 공적연금(국민연금)

국민연금은 전 국민이 의무적으로 가입하며 고소득층보다 저소득층의 급부가 더 많은 소득재분배 기능을 가지고 있어 사회보장기능이 있는 공적사회보험 제도로 볼 수 있다. 국민연금은 최소한의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제도로써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모든 국민이 자동적으로 가입하며, 비경제활동자의 경우 자율적으로 가입(임의가입)할 수 있다. 가입자의 국민연금 기여율(보험료)은 소득의 9%이며, 근로자의 경우 고용주와 근로자가 절반씩 부담한다. 사회복지제도(사회보험)로서의 기능이 있어 일환으로 소득계층 간, 현재와 미래세대 간 소득재분배 기능이 존재한다. 이를 예를 들어 살펴보면 최저소득층의 경우 기여금 대비 수익비(=수령연금총액/기여금총액)는 4배로 최상위 소득층의 1.2배에 비해 높은 수준으로 소득계층 간 소득재분배 기능이 존재한다. 또한 최상위 소득층조차도 기여금 대비 1배 이상 연금급부를 수령하므로 부

족분은 미래세대가 부담해야 하는 세대 간 소득재분배가 존재한다. 이러한 세대 간 이전 특성으로 인해 지속적이고 충분한 인구 및 경제성장이 뒷받침되지 않을 경우 국민연금제도의 지속성은 담보될 수 없다.

국민연금의 재정안정화를 위해 국민연금이 목표하고 있는 소득대체율은 두 차례의 개혁을 거쳐 하향 조정되었다. 시행 초기 40년 가입자를 기준으로 70% 수준이던 국민연금의 목표소득대체율은 40%로 축소되었는데, 이에 따라, 국민 스스로 노후를 준비하는 사적연금의 기능이 강조되고 있으며 정부는 여러 가지 세제혜택 제공을 통해 사적연금 가입유인을 제고하고 있다.

2) 준공적연금(퇴직연금)

퇴직연금은 기존 퇴직금의 수급권 보호 및 노후소득보장을 위해 2005년 도입되었으며 이는 사적기능에 의한 제도이나 정부정책에 의해 2016년부터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모든 사업장의 퇴직연금가입이 의무화된다. 퇴직연금의 가입은 의무사항이나 퇴직연금 적립금의 적립·운용기관은 은행, 증권사, 보험사 등 사적금융기관이다. 따라서 의무가입으로 인한 공적특징과, 운용기관이 금융기관이라는 사적특징을 모두 가지고 있는 준공적연금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사적연금의 특성상 연금상품은 가입자의 납입금액 총합이 연금수령금액 총합과 일치하는 수지상등의 원리를 만족시키도록 설계된다.

퇴직연금에서 파생된 개인형퇴직연금(IRP: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제도는 퇴직연금 적립금 운용의 효율성과 지속성을 제고시키기 위해 2013년부터 도입되었으며, 퇴직 IRP와 적립 IRP로 나눌 수 있다.⁶⁹⁾⁷⁰⁾ 기존 퇴직연금 가입자가 55세 이전 퇴직 시 퇴직연금 적립금은 IRP에 적립되며 이를 퇴직 IRP라 한다. 또한 기존 퇴직연

69) 소규모사업장의 퇴직연금 도입을 위한 기업 IRP가 존재하나 본고에서는 퇴직 IRP와 적립 IRP를 포괄한 개인 IRP에 초점을 맞추어 논의를 전개함.

70) 개인 IRP를 퇴직 IRP와 적립 IRP로 나누는 것은 법률적으로 통용되는 공식용어는 아니나 본고에서는 설명의 편의를 위해 실무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그대로 사용함.

금 가입자는 퇴직 이전에 IRP계좌를 개설하여 본인의 의사에 따라 추가적으로 노후 자금을 적립할 수 있으며 이를 적립 IRP라 한다. 기업형 IRP는 퇴직연금을 운용하기 어려운 10인 이하의 사업장에서 근로자에게 IRP를 개설하여 퇴직연금계좌 대신 이용하여 퇴직연금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퇴직 IRP의 경우 세제는 DC형 퇴직연금의 세제와 유사하다.

〈표 V-1〉 IRP 구분

IRP 종류	세부구분	가입방법	적립금 원천	특징
개인형 IRP	퇴직 IRP	의무가입	고용주 부담	퇴직연금 연속성 제고
	적립 IRP	임의가입	가입자 부담	가입자 의사에 따른 퇴직연금 추가적립
기업형 IRP	기업 IRP	의무가입	고용주 부담	소규모사업장의 퇴직연금도입

3) 개인연금

개인연금은 가입이 의무화되어있는 공적·준공적연금과 달리 가입자의 의사에 따라 임의로 가입하는 연금상품으로 세제적격과 세제비적격 연금상품으로 나눌 수 있다. 세제적격개인연금저축(이하 ‘연금저축’)의 경우 은행, 증권사, 보험사에서 연금저축상품에 가입할 수 있다. 이때, 은행 상품의 경우 개인연금저축신탁, 증권사 상품의 경우 개인연금저축펀드, 보험사 상품의 경우 개인연금저축보험을 주로 판매한다.⁷¹⁾ 이들에 대한 세제혜택은 동일하여 납입 시 세액공제 혜택이 있으며, 수령 시 원금을 포함한 수령액 전체에 과세한다. 세제비적격 연금상품의 경우(이하 ‘연금보험’) 생명보험사에서만 가입이 가능하다. 연금보험상품은 보험금 납입 시 세액공제 혜택이 없으나, 수령 시 역시 원금을 포함한 수령액 전체에 대해 비과세한다.

71) 은행은 연금저축 신탁과 함께 연금저축 펀드 및 방카슈랑스를 통한 연금저축 보험을 판매할 수 있고, 증권사 역시 연금저축 신탁을 취급할 수 있음.

나. 우리나라의 연금세제 체계

우리나라의 대략적인 연금세제는 적립기(혹은 납입기)에 세제혜택을 제공하고 (Exempt), 운용단계에서 운용수익에 대해 비과세(Exempt)하며, 연금수령 시 과세 (Taxation)하는 EET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 기본적으로 적립기 세제의 경우 공적 혹은 준공적연금의 적립기 세제혜택은 연금적립액을 과세대상소득에서 제외하는 방식으로 세제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며, 연금저축과 같이 개인의 자발적 의사에 의한 연금 납입금액에 대해서는 일정비율로 세금을 감면해 주는 세액공제 방식으로 세제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수령 시에 공적연금에 대해서는 종합과세를 원칙으로 하고, 퇴직연금에 대해서는 퇴직소득세, 사적연금에 대해서는 일정 금액 이하에 대해서 연금소득세를 일정금액이 초과할 경우 여타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과세한다.

1) 공적연금(국민연금)

공적연금의 납입 시(기여 시) 납입금액에 대해 비과세, 적립금 운용 시 운용이익에 대해 과세하지 않으나 연금으로 수령 시 과세한다. 기여금으로 납입된 부분은 소득공제 방식으로 과세대상에서 제외되고 해당 금액은 연금수령 시 과세되므로 과세 누락은 발생하지 않는다. 근로자의 경우 고용주와 근로자가 기여금을 절반씩 부담하나 고용주 부담금은 비과세하며, 근로자 기여금은 소득공제를 통해 비과세한다. 자영업자의 경우 본인이 모든 기여금을 부담하며 납입한 기여금은 종합소득세 결정 과정에서 전액 소득공제하여 비과세된다. 적립금 운용 시 비과세되는 부분은 펀드 등의 금융상품이 보유 중 평가이익에 대해 결산을 통해 과세되는 것에 비교하여 세제혜택이 있는 것으로 볼 수도 있으나, 공적연금은 펀드 등 실적배당형 금융상품이 아니라 국민의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제도로서의 특수성으로 이해할 수 있다. 또한, 운용수익으로 적립된 금액은 연금수령 시 과세가 이루어지므로 과세누락분은 발생하지 않는다. 연금수령 시 연금수령액의 3~5%의 연금소득세를 납부하며, 종합소득세를 통한 과세가 납

세자에게 유리하다면 종합소득세 적용을 선택할 수 있다. 단, 퇴직연금 본인기여금 및 개인연금 등 사적연금의 연금수령액이 연간 1,2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공적연금 수령액 및 여타 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종합과세하며 이 경우 연금소득세 분리과세 선택이 불가능하다.

2) 준공적연금(퇴직연금)

퇴직연금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을 근거로 하며 기업이 근로자의 계좌에 연금여의 일정 부분(연간 총급여의 1/12) 이상을 적립하는 방식으로 지급되며 기본적으로 공적연금과 마찬가지로 EET 방식을 적용한다. 이를 풀어서 설명하면, 회사가 지급하는 퇴직연금 적립금은 근로자에게는 비과세되며 회사에는 비용(손금)으로 인정되며, 적립된 퇴직연금의 운용수익에 대해서는 비과세된다. 이때, DC형 퇴직연금의 경우 일반적인 펀드와 같이 실적 배당형 금융상품으로 볼 수도 있으나 이는 퇴직연금의 노후보장 기능 및 연금의 특성을 고려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수령 시 원금 및 운용수익에 대해 과세가 이루어지므로 과세이연으로 인한 과세누락은 발생하지 않는다. 연금수령 시에는 과세이연된 원금과 운용이익 전체에 대해 퇴직소득세로 과세한다. 퇴직연금적립금은 수령 시 금액과 상관없이 퇴직소득으로 분류과세되어 종합과세대상이 되지 않는데, 이는 퇴직소득이 일회성 소득이라는 점과 노후준비를 위한 소득이라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2015년부터 퇴직연금 적립액을 연금으로 수령 시 퇴직소득세는 30% 감면되며, 결정된 세액은 연금수령기간 동안 균등하게 분할 납부한다.

퇴직연금 가입자의 경우 본인의 DC형 퇴직연금 혹은 본인의 IRP계좌에 임의로 기여금을 납입할 수 있으며 연금저축 기여금과 합쳐 700만 원까지 세액공제된다. 본인 기여금의 경우 납입 시 12%의 세액공제를 받고, 적립금 운용 시 운용이익에 대해 비과세되며, 수령 시 과세되는데, 연금수령연령 이후 연금으로 수령 시 3~5% 연금소득세로 과세되며 일시금으로 수령할 경우 기타소득세(15%)로 과세된다.

퇴직연금에서 과생된 IRP는 근로자의 퇴직으로 인해 퇴직연금의 연속성을 위해 퇴

직연금의 사업주 부담금이 적립되어 있는 퇴직 IRP와 퇴직연금 가입자가 노후자금 준비를 목적으로 임의로 가입하는 적립 IRP로 구분할 수 있다.⁷²⁾ IRP의 적립금은 그 원천에 따라 수령 시 과세를 달리하는데 고용주 부담금의 경우 퇴직소득세로 과세하며, 본인부담금의 경우 연금으로 수령 시 연금소득세로, 일시금 수령 시 기타소득세로 과세한다.

〈표 V-2〉 퇴직연금 제도별 세제 비교

구분	DB형	DC형	개인형 IRP	
			퇴직 IRP	적립 IRP
납입주체	사용자(기업)	사용자(기업) 및 근로자	사용자	근로자
운용주체	사용자(기업)	근로자	근로자	근로자
불입한도	해당 없음	연금저축계좌와 합산 연 1,800만 원(퇴직금 제외)		
과세대상	퇴직금	퇴직금(기업) + 근로자 납입분 ¹⁾ + 운용수익	근로자 납입분 ¹⁾	
과세시점	55세 이후 퇴직 시			
세 제 혜 택	납입 시	-	근로자 납입분 연 700만 원 내 세액공제[12%(13.2%), 연소득 5,500만 원 이하 15%(16.5%)]	
	수령 시	-	사업주 기여분 연금수령 시 퇴직소득세의 70% 과세	
		-	근로자 기여분 연금수령 시 분리과세 (연 1,200만 원 한도)	
	요건	55세부터 5년 이상 수령 시 적용		
중도해지 또는 일시금 수령 시	퇴직소득세	사업주 기여분 퇴직소득세, 근로자 기여분 세액공제 받은 원금 및 운용수익에 대한 기타소득세(16.5%)		

주: 1) 근로자 납입분 중 세액공제를 받지 못한 금액은 과세제외됨.

2) 퇴직급여를 연금으로 수령 시 퇴직소득세의 30%를 감면.

3) 사적연금(연금저축)

연금저축의 경우 EET 방식으로 과세가 이루어지고 있다. 2013년까지 납입 시 소득 공제 방식으로 과세이연이 이루어 졌으나, 2014년부터는 최대 400만 원까지 12%(연

72) 이는 근퇴법상에는 규정되지 않는 분류이나 실무를 반영한 용어를 사용함.

소득 5,500만 원 이하자는 15%)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한다. 공적·준공적연금과 마찬가지로 운용 시 수익에 대해서는 비과세하며, 수령 시에는 만기 이후 일시금 수령 시 세율 15%의 기타소득세로 과세하며, 연금수령 시 3~5% 연금소득세로 과세한다. 연금수령 시에는 연금수령으로 인정하는 금액의 한도(연금수령한도)⁷³⁾가 존재하는데, 인정금액 이하로 수령 시 연금소득세율이 적용되며 이를 상회하는 금액은 기타소득세로 과세한다. 그리고 중도인출 및 해지 등 연금 외 수령 시 원칙적으로 15%의 기타소득세를 부과하나 부득이한 사유⁷⁴⁾ 혹은 의료비로 인출 시 3~5%의 연금소득세로 분리과세 한다.

당해 세제혜택을 초과하는 적립금의 경우 납입 시에는 세제혜택을 받지 못하고 만기 이후 수령 시 세제혜택을 받지 못한 부분의 운용수익에 대해서는 과세하나 세제혜택을 받지 못한 원금에 대해서는 비과세한다. 이를 예를 들어 설명하면 한 해 세액공제 한도가 400만 원인 연금저축에 600만 원을 납입하고 만기 시 운용수익 100만 원이 발생하여 총 700만 원이 되었다면, 연금수령 시 세제혜택을 받은 400만 원과 운용수익 100만 원에 대해서는 연금소득세로 과세하며, 세제혜택을 받지 않은 원금 200만 원에 대해서는 비과세된다.

2. 이슈 및 문제점

가. 연금세제의 복잡성

앞서 살펴보았듯이 현재의 연금세제는 공적연금과 준공적연금 그리고 완전한 사적연금으로는 연금저축과 연금보험으로 나뉘어 있고 각각의 납입 시 그리고 수령 시 세제가 모두 달라 그 복잡성으로 인해 일반인이 쉽게 이해하고 이용하기가 어렵다. 예를 들면 공적연금은 연금과세 혹은 종합과세 방식을 선택할 수 있고, 퇴직연금의

73) 연금수령한도 = ((연금계좌의 평가액) / (11 - 연금수령연차)) × 120%

74) 천재지변, 가입자의 사망 또는 해외이주, 가입자 또는 그 부양가족의 3개월 이상의 요양, 가입자의 파산선고/개인회생, 금융회사의 영업정지 인·허가 취소 등.

고용주 기여분은 수령형태와 관계없이 퇴직소득세로 분류과세되며, 퇴직연금 및 IRP 본인 기여분은 연금수령 시 연금소득세로 일시금 수령 시 기타소득세로 과세된다. 연금저축의 경우 만기 후 연금수령 시 연금소득세로, 일시금 수령 시 세율 15%의 기타소득세로 과세하는데, 같은 임의가입형태에서도 개인연금과 IRP는 세제혜택과 중도인출 조건 등에서 차이가 난다. 사적연금의 연금수령 인정 조건 역시 ‘(전체적립액 / (11 - 가입연수)) × 120%’의 형태로 일반인이 이해하기 어려운 형태로 제시되어 있다. 물론 이러한 복잡한 세제체계가 각기 다른 연금수요를 가진 수요자들에게 필요한 연금가입유인을 제공하기 위해 설계되다 보니 복잡하게 설계되는 측면도 있다고 할 수 있으나, 현재의 연금세제는 세분화로 인한 이익보다는 복잡성으로 인한 불편함 및 제도이해도의 저해로 인한 손실이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연금세제의 단순화와 필요한 계층에 맞춤형으로 연금가입 유인을 제공할 수 있는 세제개편이 필요하다.

〈표 V-3〉 연금세제

연금분류	연금종류	가입형태	과세방식	비고
공적연금	국민연금, 특수직역연금	의무가입	종합소득세	-
퇴직연금	DC, DB, 퇴직 IRP	의무가입	퇴직소득세	연금수령 시 퇴직소득세 30% 감면
	적립 IRP	임의가입	연금소득세	일시금 수령 시 기타소득세과세 (세율 15%)
개인연금	연금저축	임의가입	연금소득세	

나. 세액공제의 문제점

정부는 2014년부터 연금저축 납입 시 과세이연방식을 소득공제에서 공제율 12%의 세액공제로 전환하였다. 세액공제 방식으로 인해 한계세율이 높은 고소득층은 세제혜택이 줄어들고, 한계세율이 낮은 저소득층은 세제혜택이 증가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저소득층의 연금저축 가입유인 제고 측면에서 정부의 세제개편의 의도는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연금저축의 주요 수요층이 중산층인 것을 고려할 때 이들의 한계세율보다 낮은 수준의 세액공제율을 적용한 세액공제로의 전환은 중산층의 연금가입유인을 감소시키는 문제가 있다. 세액공제로 전환된 2014년 연금저축 신규가입건수 및 가입액이 대폭 감소하였는데, 이는 개인연금저축은 3층 연금의 가장 윗부분에 위치하고 주요 대상자는 중상위 소득계층을 대상으로 한 소득보장 제도라는 점에서 볼 때 개인 연금저축의 주요 수요층인 중상위 소득층의 연금저축 가입동기가 12%의 세액공제율 적용의 영향으로 줄어든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는 기존연구⁷⁵⁾에서 이미 예측된 것처럼 세액공제로 전환이 연금가입이 어려운 저소득층의 가입증대에는 효과가 적은 반면, 세제혜택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중산층 이상 계층의 연금가입유인은 감소하는 결과가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V-4〉 근로자 소득계층별 개인연금저축 신계약 건수

(단위: 만 원, %)

구분	~2,000		2,000~4,000		4,000~6,000		6,000~8,000		8,000~10,000	
	가입률	평균 납입액	가입률	평균 납입액	가입률	평균 납입액	가입률	평균 납입액	가입률	평균 납입액
2011	2.8	158	25.0	221	47.4	270	60.8	291	68.8	315
2012	3.1	164	24.5	226	47.6	278	61.9	299	70.6	321
2013	2.8	181	22.0	229	45.9	279	61.1	303	70.4	324
2014	1.9	102	17.5	208	43.3	275	58.6	301	69.0	320

자료: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정원석(2016), 「세액공제 제도 도입 이후 연금저축 행태변화와 시사점」.

세액공제 방식은 연금가입의 효과성 측면뿐만 아니라 과세 논리 측면에서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이 존재하는데, 우리나라에서 연금에 적용 중인 EET 과세 방식은 납입 및 운용 시 비과세하고 비과세된 소득을 수령 시 과세하는 제도이다. 하지만 세액공제 방식의 경우 납입액의 일정 비율을 세금감면해 주는 방식이기 때문에 납입 시 과세된 부분에 대해 수령 시 다시 한 번 과세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여 EET 방식의 일관성이 훼손되는 문제가 있다.

75) 정원석·강성호(2015a).

다. 이중과세 문제

세액공제 전환으로 인해 저소득층 가입자에 대한 이중과세 문제가 발생하는 것 또한 현재 연금세제의 문제점이라 할 수 있다. 근로소득자는 연말정산 시 총소득에서 소득공제 항목을 공제하고 이에 세율을 곱해 산출세액을 결정한 다음,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 항목을 차감하여 결정세액을 계산한다. 이때, 연말정산 신고 시 소득공제 항목으로 인해 과세표준이 0원이 되더라도 연금세액공제를 신청할 경우 실질적인 혜택은 없으나 세제혜택을 받은 것으로 처리하여 과세하게 된다. 이를 예를 들어 설명하면, 소득공제 후 산출세액이 10만 원으로 결정되고 연금저축 납입액이 400만 원에 대한 세액공제액이 48만 원 인 경우 결정세액 10만 원까지만 환급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연금 수령 시에는 전체금액에 대해 세제혜택을 받은 것으로 보고 연금수령액 전체에 대해 과세한다. 이는 연금 납입 시에 세제혜택을 받지 못해 과세된 금액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여 이중과세가 되는 문제점이 발생한다고 볼 수 있으며, 특히, 이중과세의 대상이 면세점 이하이거나 산출세액이 적은 저소득층이라는데 더 큰 문제점이 있다 하겠다.

라. 세제혜택의 한계

기본적으로 연금에 대한 세제혜택은 과세이연 혹은 세(稅)부담 감소를 통해 연금 가입 유인을 강화하기 위해 제공되고 있다. 하지만 과세표준이 면세점 이하인 저소득층의 경우 아무런 세제혜택을 받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다. 더욱이 우리나라 근로자의 48%가 면세점 이하자라는 현실은 세제혜택의 한계를 여실히 보여준다. 따라서 노후 소득보장을 위한 준비가 꼭 필요한 중산층 이하 계층의 연금가입유인 증대를 위한 획기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3. 해외의 연금세제

가. 영국

1) 공적연금의 과세제도

가) 공적연금제도

① 기초국가연금(BSP: Basic State Pension)

영국의 공적연금은 3층 노후소득보장체계 중 1층 기초국가연금(BSP: Basic State Pension)과 2층 제2국가연금(S2P: State Second Pension)으로 구성되어 있다. 1층을 구성하고 있는 기초국가연금(BSP)의 의무가입대상자는 근로자와 자영업자이며, 노령·유족·장애에 대한 연금 급여 지급을 통해 기초소득을 보장해주고 있고, 2층을 구성하는 있는 제2국가연금(S2P)의 의무가입대상자는 근로자이며 퇴직 후에도 생활수준이 유지될 수 있도록 소득수준에 비례하여 급부를 제공하고 있다.

기초국가연금(BSP)은 개별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아닌 국민연금(NIC: National Insurance Contribution)에 포함되어 운영되고 있다. 국민연금(NSP) 가입대상자는 4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는데 1종은 근로자, 2종은 저소득자영업자, 3종은 자발적 가입에 해당하는 학생이나 외국거주자, 4종은 고소득자영업자로 구분된다. 여기서 1종 근로자는 주당 소득이 155파운드에서 815파운드 사이의 소득인 경우로 보험료율 12%가 적용되며, 주당 소득이 815파운드 이상인 경우 815파운드 초과분에 대하여 2%의 보험료율을 적용한다. 2종 저소득자영업자는 연 소득이 5,965파운드 이상인 경우 주당 2.80파운드를 보험료로 납부해야 한다. 3종의 경우 자발적 가입자로서 주당 2.80파운드의 보험료를 납부하며, 4종 고소득자영업자는 연 소득이 8,060파운드에서 42,385파운드 사이인 경우 9%의 보험료율이 적용되고 42,385파운드 이상의 소득인 경우 42,385파운드 초과분에 대하여 2%의 보험료율을 적용한다.

〈표 V-5〉 국민연금(NIC) 유형별 보험료율(2015. 4. 6~2016. 4. 5)

구분		소득수준	사용자
1종 (Class 1)	사용자	주 £156 초과	13.8%
		적용제외방식 ⁷⁶⁾ (Contracted-out pension schemes)에 의한 환급률	3.4%
		금전매입방식(Money-purchase schemes)에 의한 환급률	-
	근로자	주 £155 미만	보험료 납부 제외
		주 £155~£815	12%
주 £815 초과		초과소득의 2%	
적용제외방식(Contracted-out pension schemes)에 의한 환급률		1.4%	
2종 (Class 2)	저소득 자영업자	연 £5,965 미만	주 £2.80
3종 (Class 3)	자발적 가입자	-	주 £5.60
4종 (Class 4)	고소득 자영업자	연 £8,060~£42,385	9%
		연 £42,385 초과	초과소득의 2%

자료: <http://www.gov.uk>.

기초국가연금(BSP)의 가입의무자는 16세 이상 65세(여성 60세) 미만인 자로 국민연금 기여기간에 따라 연금급여액이 달라진다. 소득에 관계없이 동일기간 동안 국민연금에 가입한 경우 같은 연금급여액을 수령하게 되어 재분배 기능이 있으며, 질병, 장애, 실업상태 등으로 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는 경우에도 크레딧 제도를 통해 기여기간을 인정해줌으로써 기초연금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기초국가연금(BSP)의 급여는 30년의 가입기간을 충족한 경우 완전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으며 수령금액은 주당 최대 115.95파운드(2015년 기준)인데, 과거에는 남성의 경우 44년, 여성의 경우 39년의 가입기간을 충족해야 완전연금의 수령이 가능했으나 2011년 연금법 개정을 통해 완전연금 수령을 위한 가입기간이 남녀 모두 동일하게 30년으로 감소하였다. 또한 결혼 또는 동성혼으로 인하여 자격요건에 미달하거나 완

76) 적용제외(Contraction-Out)란 제2국가연금에 상응하는 직업연금(Occupational Pension)에 가입하는 경우 제2국가연금 가입 면제가 가능함을 뜻함.

전연금을 수령할 수 없는 경우에도 배우자의 기여기간에 따라 가입기간을 인정받을 수 있다. 단, 부부 모두 수급연령에 도달해야 수령자격이 주어지며 배우자의 기여로 인해 69.50파운드를 추가적으로 수령할 수 있다. 수령 시 연금급여는 평균 임금소득 상승률, 물가상승률(CPI), 2.5% 중 가장 높은 것과 연동되어 지급된다. 기초국가연금(BSP)의 수급개시연령은 남성 65세, 여성 60세이나 2018년부터 연금수급개시 연령을 단계적으로 높여 2020년에는 60세, 2026년에는 남녀 모두 67세로 상향조정된다.

기초국가연금제도는 고용연금부(Department of Work & Pension)에서 담당하고 있으나 사회보장세의 성격이 강해 국세청(HM Revenue & Customs)에서 징수하고 있으며, 국세청 내에는 국민연금국(NICO: National Insurance Contributions Office)이 독립적으로 설립되어 있다.

② 제2국가연금(S2P: State Second Pension)

제2국가연금(S2P)은 기초국가연금에 부가하여 운영되는 소득비례연금으로 사적 연금가입이 불가피한 계층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국가에서 보충해 주는 연금이다. 저소득일수록 혜택을 증가되도록 설계되어 기초국가연금과는 달리 소득재분배 기능 역할을 한다.

제2국가연금(S2P)은 일정요건⁷⁷⁾을 충족한 근로자를 가입대상으로 하고 가입자는 기초국가연금에 부가하여 가입하므로 추가적인 기여금을 납부하지 않는다. 단, 연간 소득 5,824파운드(2015년 기준)에 못 미치거나 자영업자, 실업자는 가입이 불가능하다. 그리고 기초국가연금에 가입한 근로자가 적용제외방식(Contracted-out pension schemes)을 적용받게 되는 경우 근로자는 주당 155파운드와 815파운드 사이의 소득에 대하여 1.4%의 기여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

제2국가연금(S2P) 급여에 적용되는 발생이율(accrual rate)은 2007년 연금법 개정으로 인해 2단계로 간소화되었었는데, 1단계는 연 소득이 5,772파운드와 15,100파운

77) ① 소득이 연간 5,824파운드(2015년 기준)를 초과하는 경우, ② 12세 이하의 아동을 양육한 경우, ③ 주당 20시간 이상 아픈 사람이나 장애인을 돌본 경우, ④ 질병이나 장애로 인해 급여를 받은 경우.

드(2015년 기준)인 경우 92.0파운드의 고정적인 발생이율을 지급하며, 2단계는 연 소득이 15,100파운드와 40,040파운드 사이인 경우 10%의 발생이율을 적용한다.⁷⁸⁾ 뿐만 아니라 기초국가연금과 같이 크레딧제도를 통해 기여기간을 추가로 인정해주고 있다.

제2국가연금(S2P)은 기초국가연금(BSP)과 같이 고용연금부(Department of Work & Pension)에서 담당하여 관리·운영하고 있다.

나) 과세제도

영국의 공적연금은 국가보험(National Insurance) 안에서 함께 운용되므로 기여금은 사회보장세의 성격을 갖고 있으며, 적용제외제도를 두어 연금 간에 유기적 연계 운용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과세방식은 납부·운용단계에서 세제혜택(소득공제)을 부여하고 수령단계에서 과세하는 EET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① 납입 단계

기초국가연금(BSP)과 제2국가연금(S2P)의 재원은 국민연금(NIC) 기금과 함께 운용되므로 사용자의 기여금은 근로자의 과세소득이 아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기여금은 근로자의 과세대상 소득에서 제외된다.

② 운용 및 수령단계

운용 단계에서 발생하는 투자수익은 과세되지 아니한다. 수령단계의 경우 일반적으로 사회보장급여는 세법상 비과세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공적연금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한다. 과세 시 방법은 개인이 공적연금 급여를 수령한 경우 이를 납세의 무자의 총소득에 포함시키고 세법상 공제항목을 적용한 후 순소득을 산출하여 저축 소득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하게 되며 저축소득에 대한 적용 세율은 아래 표와 같다.

78) 2012년 4월 6일 이전에는 1단계에서 소득의 40%를 발생이율로 적용하였으며 2단계에서 소득의 10%를 발생이율로 적용하였음. 이는 중·장기적으로 정액급여 형태로 전환하기 위한 과도기적 단계였음을 나타냄.

〈표 V-6〉 저축 과세소득에 대한 세율(2015. 4. 6~2016. 4. 5)

(단위: £, %)

Tax Band	연 소득금액	세율
Starting rate	2,880 이하	10
Basic rate	2,880~31,865	20
Higher rate	31,865~150,000	40
Additional rate	150,000 이상	45

자료: HM Treasury, Policy paper(2015).

2) 퇴직연금 및 개인연금의 과세제도

가) 퇴직연금제도

① 확정급여형(DB) 기업연금

확정급여형(DB) 기업연금(Salary-related Schemes)은 강제성을 띤 퇴직연금으로 2007년 연금법 개정을 통해 자동가입되며 희망자에 한해서 적용제외(contracting-out) 방식을 인정받는다. 이때 확정급여형(DB) 기업연금이 적용제외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제2국가연금(S2P)보다 더 높은 급여가 지급되어야 한다.

기여금은 사용자와 고용주가 분담하여 납입하며 연금 급부는 산정기준에 따라 최종급여방식(Final salary schemes)과 평균급여방식(Average salary scheme)으로 구분한다. 최종급여방식은 최종급여에 일정비율을 곱하여 산정하는데 연금으로만 수령하는 경우 최종급여에 근속년수와 1/60을 곱하여 산정하고, 일부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경우 근속년수에 1/80을 곱하여 산정한다. 반면, 평균급여방식은 최종급여 대신 생애평균소득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② 확정기여형(DC) 기업연금

확정기여(DC)형 기업연금(Money Purchase Schemes)은 근로자가 개별적으로 연금계좌에 기여금을 납부하여 운용하는 방식이다.

③ NEST(National Employment Saving Trust)

NEST는 퇴직연금 가입의 활성화와 사각지대에 있는 중·저소득층과 소규모 기업의 근로자들을 위하여 도입되었으며 자동가입 형태를 띠고 있다. 자동가입이란 2008년 퇴직연금법 개정으로 2012년 10월부터 일정기준을 충족하는 근로자가 탈퇴 의사를 표하지 않는 한 자동적으로 가입(Auto-enrolment)이 이루어지는 퇴직연금 가입 형태를 말한다. 22세 이상이고 연소득이 10,000파운드(2015년 기준) 이상인 경우 자동적으로 가입되며, 22세 미만이거나 연소득이 5,824파운드(2015년 기준) 이상인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NEST 가입을 요청하여 가입할 수 있다. 가입대상은 특정 근로자(신규입사자, 계절노동자 등)만을 대상으로 하며 자영업자는 자동가입이 아닌 자발적으로 가입이 가능하다. NEST를 도입할 수 있는 사업장 규모를 단계적으로 확대시행하고 있으며 2016년 이후에는 3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에서도 가입이 가능하다.

NEST는 확정기여형(DC)방식으로 운영하며 매년 적립해야 하는 최소기여율(Minimum contribution)이 있으며, 최소기여율은 전 소득이 아닌 적정범위소득을 대상으로 적용되며 2015년 기준 연 5,824파운드와 42,38파운드(215년 기준) 사이 소득의 일정 비율을 의미한다. NEST 기여금의 연간최대기여한도는 4,600파운드(2015년 기준)이고 근로자는 납부한 기여금에 대해 일정부분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표 V-7〉 NEST 자동등록제도 및 최소기여율 확대시행 일정

시기	규모	기여율
2012. 10~2013. 2	250인 이상	2%(사용자: 1%, 근로자: 0.8%)
2014. 4~2015. 4	50인~249인	
2015. 8~2015. 10	30인~49인	
2016. 1~2017. 4	30인 이하	
2017. 10~2018. 10	-	5%(사용자: 2%, 근로자: 2.4%)
2018. 10 이후	-	8%(사용자: 3%, 근로자: 4%)

주: 기여율에서 사용자와 근로자가 부담하는 비율을 제외한 부분은 소득공제비율임.
자료: NEST Corp.

NEST는 확정급여형(DC)방식으로 운용되기 때문에 NEST의 급여 수준은 기금운용 성과에 따라 달라지며, 이에 따라 NEST 제도의 운영은 독립적인 공적기관인 NEST Corporation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근로자의 이익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하는 수탁주체로서의 신의성실의 의무를 가진다. NEST는 비영리기관에서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운용되기 때문에 관리비용은 매회 납부하는 기여금의 1.8%, 매년 관리비용은 총 적립금의 0.3%로 매우 낮은 수준이다. 뿐만 아니라 근로자가 중도에 이직할 경우 직장에 관계없이 하나의 계좌로 관리할 수 있으며 이직 후 발생한 기여금은 동일한 계좌에 추가 납부할 수 있어 관리 및 운용이 편리하다는 장점을 가진다.

④ 그 외 자발적인 퇴직연금

강제성을 띤 DB형 기업연금과 NEST와는 달리 자발적으로 가입이 가능한 추가임의기여제도(AVCs: Additional Voluntary Contributions)와 독립된 추가임의기여제도(FSAVC: free-standing AVC)가 있다. 이는 기업연금에 가입된 근로자가 자신의 연금 연액을 늘리기 위해 본인 스스로가 추가적으로 가입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나) 개인연금제도

개인연금제도는 1986년 APP(Appropriate Personal Pension) 방식이 도입되면서 공적연금이나 퇴직연금에 가입이 불가능한 자영업자, 실업자 등의 노후소득을 보완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개인연금은 생명보험회사 등 금융기관에서 상품을 제공되고 있으며 매우 다양한 형태로 운용되고 있다. 특히,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의 중간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이해당사자연금(Stakeholder Pension Plans)은 기존 개인연금보다 수수료를 낮추어 저소득층 근로자의 가입을 유도하고 있다.

① 이해당사자연금(Stakeholder Pension Plans)

이해당사자연금은 저소득층 근로자의 가입을 유인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민간 기업에서 담당하고 있지만 수수료는 기존 개인연금보다 낮은 수수료율로 운영되고

있다. 정부는 연금의 연간 운용수수료의 상한을 가입자 개인별 적립기금을 기준으로 1% 이내로 정하고 있다. 기여금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납입·중지할 수 있으며 다른 연금상품으로도 자유롭게 이동이 가능하다. 급여는 확정기여(DC)방식으로 자산운용 성과를 따라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연금크레딧(Pension Credit)

연금크레딧은 연금수급자들의 최저소득보장을 위한 제도로 크게 Guarantee Credit 과 Saving Credit으로 나눌 수 있다. Guarantee Credit은 일정소득 이하의 노인을 대상으로 공공부조제도의 성격을 갖고 있다. Guarantee Credit의 경우 2015년 기준으로 독신인 경우 주당 151.20파운드, 부부인 경우 주당 230.85파운드까지 소득을 국가에서 보전해주며 질병·장애가 있는 경우 추가적인 급부를 제공하고 있다. Saving Credit은 65세 이상이고 일정요건을 충족한 경우 신청이 가능하며 2015년 기준으로 독신인 경우 주당 14.82파운드, 부부인 경우 주당 17.43파운드까지 소득을 국가에서 지급한다. 이 외에도 Winter fuel payment, cold weather payment 등 다양한 크레딧을 제공하고 있다.

다) 과세제도

퇴직연금 및 개인연금의 과세체제는 소득수준에 따라 누진적 소득세율로 과세하며 연금 수령단계에서 과세하는 EET 방식을 택하고 있다.

① 납입 단계

사용자가 납입한 퇴직연금 기여금은 손금산입되고 근로자의 기여금은 소득공제되거나 납부한 기여금이 일정한도를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소득공제에 제한이 올 수 있다. 예를 들어 근로자가 연간 납입한 기여금이 3,600파운드에 못 미치는 경우 기본공제액까지만 소득공제가 된다. 또한 3,600파운드를 초과하여 납부한 경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초과납부금에 대한 소득공제는 연간한도(Annual Allowance) 40,000

파운드(2015년 기준), 평생한도(Lifetime Allowance)는 1,250,000파운드(2015년 기준)이다. 단, 초과납부금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상한은 매년 변경되는데 255,000파운드였던 연간한도는 2011년 50,000파운드로 감소하였으며 2016년에는 연간한도가 10,000파운드, 평생한도가 1,000,000파운드로 감소할 예정이다.

공제한도를 넘는 기여금은 개인의 한계세율에 따라 과세되며, 예외적으로 3년 내에 공제한도를 미달한 경우 그 차액의 범위 내에서 상계하여 공제받을 수 있다. 사용자가 납부한 기여금은 법인세 계산 시 손금산입되며 기여금을 과도하게 적립한 경우에는 손금산입에 제한을 받을 수 있다.

② 운영 및 수령단계

연금 적립금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투자수익은 운용단계에서 과세하지 않고 연금 급여를 수령하는 시점(EET 방식)에 과세한다. 통상적으로 연금소득은 Schedule D의 6가지 사업형태 중 연금소득(interest, annuities and other annual payments)에서 과세되나 비거주자의 연금소득 등 일부 연금소득은 Schedule E의 근로소득세로 과세된다. 근로자가 연금을 수령한 경우 연금 급여액은 저축, 비저축, 배당소득으로 분류하여 유형별로 다른 누진세율을 적용한다. 근로자가 수령한 급여액은 납세의무자의 총소득에 포함시키고 세법상 공제항목을 적용한 후 순소득을 산출하여 저축소득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하며 저축소득에 대하여 적용되는 세율은 아래 표와 같다.

〈표 V-8〉 저축 과세소득에 대한 세율(2015. 4. 6~2016. 4. 5)

(단위: £, %)

Tax Band	연 소득금액	세율
Basic rate	31,785 이하	20
Higher rate	31,785~150,000	40
Additional rate	150,000 이상	45

자료: Ross Martin Tax Consultancy.

퇴직연금 적립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경우 연금 수령액의 25%는 면세(Tax-free lump sum)가 가능하나 25%를 초과하는 금액을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경우 최대 55%의 세율로 과세한다. 뿐만 아니라 연금 수급연령에 도달하기 전인 55세 이전에 수령하는 경우에도 55%의 고세율이 부과된다.

나. 미국

1) 공적연금의 과세제도

미국은 사회보험에 기초하여 국내 거주하는 일정 소득 이상의 근로자 및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노인·유족·장애보험제도(OASDI: Old-Age, Survivors and Disability Insurance)를 운영하고 있다. OASDI는 사용자, 근로자, 자영업자가 납부하는 보험료를 재원으로 급여를 제공하고 있으며 보험료율은 12.4%(2015년 기준)이다. 사용자와 근로자는 보험료의 절반씩을 부담하며 사용자는 근로자 부담분을 원청징수하여 납부한다. 단, 자영업자의 경우 본인이 보험료를 전액 부담한다. 소득 상한액은 전국평균임금 지수(National Average Wage Index) 변동률에 기초하여 자동으로 결정되며, 2014년도의 상한소득액은 118,500달러이다. 급여의 종류는 노령급여, 장애급여, 유족급여, 가족급여, 고령자 특별급여, 사망일시금이 있으며, 급여액은 기본연금액에 기초하여 산정되며, 기본연금액은 근로자의 매년도 소득을 기준연도의 가치로 재평가하고, 근로자의 평균소득월액을 산정하여 이를 급여산정공식에 대입하여 계산한다. 또한 기본 연금액 비율은 저소득층일수록 높게 산정되어 소득재분배 기능을 가지고 있다.

가) 납입 단계

사용자가 공적연금에 불입하는 연금 부담금은 근로자의 과세소득이 아니며 근로자가 불입하는 연금 부담금은 소득공제되지 않는다. 다만 자영업자의 경우 보험료를 전부 부담하므로 부담금의 절반을 과세소득에서 공제해 준다.

나) 운용 및 수령 단계

연금 적립금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투자수익은 운용단계에서 과세하지 않고 연금 급여를 수령하는 시점에 과세한다. 수령 시 공적연금 이외에 다른 급여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과세하지 않으며, 사망일시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타소득 유무와 관계없이 과세되지 아니한다. 공적연금 급여소득 이외에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추계소득액(Provisional income)이 기준금액(Base amount)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과세된다.

추계소득은 공적연금 급여의 50%와 비과세소득을 포함한 연소득을 말하며, 기준소득은 공적연금 급여의 과세부분을 결정하기 위한 기준소득으로 신고유형에 따라 다르다.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독신자, 세대주, 적격미망인이 신고하는 경우에는 25,000달러이고 부부합산 신고인 경우에는 32,000달러, 기혼 단독신고인 경우에는 0달러이다. 추계소득이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공적연금 급여액의 50%에 대해 과세한다. 단, 급여의 50%와 다른 소득의 합계가 34,000달러(부부합산 신고인 경우 44,000달러)이거나 기혼단독신고인 경우에는 급여의 85%를 근로자의 총소득에 합산하여 누진세율을 적용한다.

공적연금 관리기관에서 연금 급여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를 통해 신고의무를 종료시킬 수 있는데, 이러한 원납적 분리과세를 원할 경우 납세자의 신청이 필요하며 금액에 따라 7%, 10%, 15%, 25%의 세율이 적용된다.

2) 퇴직연금의 과세제도

가) 퇴직연금의 종류

미국의 퇴직연금제도는 종업원퇴직소득보장법(ERISA: Employee Retirement Income Security Act)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일정요건을 충족한 적격퇴직연금의 경우 미국세법상 과세이연 등의 세제혜택을 부여한다. 적격퇴직연금에는 직역연금, 개인연금뿐만 아니라 이익분배제도(Profit Sharing Plans), 금전구입제도(Money Purchase

Plans), 주식상여제도(Stock bonus plans) 등을 포함하며 직역연금에는 401(K)연금, 자영업자를 위한 연금(SEPs: Simplified employee pension plans), 소상공인을 위한 저축연금(SIMPLE: Saving incentive match plans for employees), 주정부·지방정부 공무원 퇴직연금인 457연금, 비영리단체 근로자를 위한 연금 403(b)연금, 기업연금(occupation pension), 우리사주조합기금(ESOPs: Employee stock ownership plans) 등이 있다.

직역연금의 경우 근로자가 기여금을 부담하는 수준에 따라 사용자가 전액 기여금을 부담하는 형태(Non-Contributory Pension Plan)와 근로자가 일부 기여금을 부담하는 형태(Contributory Pension Plan)로 나눌 수 있다. 또한 기금운용의 투자위험이 사용자에게 있는지 근로자에게 있는지를 기준으로 하여 확정급여형 퇴직연금(Defined Benefit Plans), 확정기여형 퇴직연금(Defined Contribution Plans)으로 나눌 수 있다.

확정급여형(DB) 연금제도는 기금운용의 투자위험이 사용자에게 있으며 미래에 수령하게 될 근로자의 연금급여액은 근무연수, 소득수준 등을 고려한 공식에 의하여 미리 설정된다. 이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의 연금급여 지급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외부에 설정된 신탁에 회사의 이익발생여부와 관계없이 매년 일정금액의 연금 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근로자는 연금이 개시되기 전까지 확정 미지급급여에 대한 청구권을 갖게 되며 사용자가 지급능력을 상실한 경우에도 퇴직연금보험공사(Pension Benefit Guranty Corporation)로부터 지급보증을 받을 수 있다. 근로자가 연금 수급권을 얻기 위해서는 일정요건에 충족해야 하는데, 보통 5년 이상 근무한 경우에는 사용자가 납부한 근로자 발생급부의 100%를 수령(일시 수급권 부여, cliff vesting schedule)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게 된다. 혹은 사용자가 납부한 근로자 발생급부를 3~7년에 걸쳐 20%씩 단계적으로 부여(단계별 수급권 부여, graded vesting schedule)받을 수도 있다.

확정기여형(DC) 연금제도는 미래에 수령하게 될 근로자의 연금급여액이 보장되지 않아 기금운용의 투자위험이 근로자에게 있으며, 근로자 스스로가 투자성향과 재정 상황에 맞추어 투자결정을 할 수 있다. 근로자가 이직하는 경우에는 전 직장의 연금 수급권을 개인 계정으로 이전(rollover)할 수 있으며, 가입대상에 따라 401(k)연금,

457연금, 403(b)연금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급여는 일시금 지급, 분할 지급 중 선택 가능하다.

401(k)연금은 근로자들이 가장 많이 활용하는 퇴직연금으로 이익분배제도, 주식상여제도 등과 결합할 수 있으며 일정한도 내에서 다양한 세제혜택을 부여한다. 401(k) 연금은 근로자가 급여 수령 시 일정한도 내에서 현금 또는 연금의 형태로 수령할 것인지 선택할 수 있으며 후자를 선택적 이연(Elective deferral)이라고 칭한다.

가입자격은 21세 이상이고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는 가입이 가능하며 연금 수급권을 얻기 위해서는 일정요건에 충족해야 하며, 3년 이상 근무한 경우에는 사용자가 납부한 근로자 발생급부의 100%를 수령(일시 수급권 부여, cliff vesting schedule)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게 된다. 또는 사용자가 납부한 근로자 발생급부를 2~6년에 걸쳐 20%씩 단계적으로 부여(단계별 수급권 부여, graded vesting schedule)받을 수도 있다.

나) 납입 단계

① 확정급여형(DB) 연금

사용자의 부담금은 사용자의 과세소득 계산 시 일정한도 내에서 손금산입하고 납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해당 근로자의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단, 사용자의 부담금이 완전적립금⁷⁹⁾ 한도(full funding limitation)를 초과한 경우에는 사용자의 과세소득 계산 시 손금불산입된다. 손금산입 한도를 초과한 금액은 다음 연도로 이월할 수 있으나 징벌적 세금(exercise) 명목으로 한도초과출연금이 소멸할 때까지 초과금액의 10%를 부과한다. 그리고 DB형 퇴직연금의 경우 근로자의 부담금은 소득공제 받을 수 없다.

79) 당해 연도 말을 기준으로 연금수급권을 확보한 근로자에게 사용자가 미래에 지급해야 할 연금 급여액의 현재가치를 의미함. 여기서 연금 급여액은 근로자의 3년 연속 최고 평균 급여액과 210,000달러(2015년 기준) 중 적은 금액으로 함.

② 확정기여형(DC) 연금

확정기여형 연금에 적용할 수 있는 부담금의 한도⁸⁰⁾는 근로자 총급여(최대 265,000달러, 2015년 기준)의 100%와 53,000달러(2015년 기준) 중 적은 금액으로 한다. 사용자의 부담금은 사용자의 과세소득 계산 시 근로자 총급여(최대 265,000달러)의 25% 한도 내에서 손금산입할 수 있다. 손금산입을 초과한 금액은 다음 연도로 이월할 수 있으나 이때에도 한도초과출연금이 소멸할 때까지 매년 10%의 징벌적 세금을 부과한다. 근로자가 401(k)연금과 결합한 경우 근로자의 부담금도 일정한도 내에서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근로자가 선택적 이연을 선택한 경우 해당 이연금액은 소득공제되어 납입시점이 속한 과세연도의 근로자 소득으로 인식되지 않으며 연금급여를 수령하는 시점에 과세한다. 이연금액한도는 근로자의 총급여액(최대 265,000달러)의 25%와 18,000달러(2015년 기준) 중 적은금액으로 한다. 또한 50세 이상 근로자의 경우 선택적 이연금액 외에도 6,000달러(2015년 기준)를 추가로 출연할 수 있다. 근로자는 특정경우에 한하여 조기인출이 가능하며, 그 외의 경우는 59.5세 이전 인출 시 소득세 이외에 10%의 징벌적 세금을 부과한다.

사용자는 근로자의 선택적 이연에 대하여 매칭연금부담금(employer-matching contribution)을 추가적으로 출연할 수 있다. 매칭연금부담금의 한도는 근로자 총급여(최대 265,000달러)의 100%와 35,000달러(53,000달러 - 18,000달러) 중 적은 금액이며 대체적으로 근로자 부담금의 3~6% 수준으로 추가 납부한다.

다) 운용 및 수령 단계

① 연금 수령 시

확정급여형(DB) 연금의 경우 운용단계에서 발생하는 투자수익은 완전적립금(full funding) 범위 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며 확정기여형(DC) 연금의 경우 운용단계에서의 투자수익은 모두 비과세된다.

수령 시 세제의 경우 퇴직연금 적립금을 연금으로 수령할 경우에는 근로자는 수령

80) 연금 적립금 한도액은 사용자분과 근로자분을 합한 금액임.

하는 급여(benefit)에서 원금(cost)에 해당하는 부분을 차감하여 과세대상소득을 산출한 후 총소득과 합산하여 누진세율을 적용한다.

〈표 V-9〉 유형별 개인소득세율(2015년)

(단위: \$, %)

단독신고	부부합산신고	세대주신고	세율
9,225 이하	18,450 이하	13,150 이하	10.0
9,226~37,450	18,451~74,900	13,151~50,200	15.0
37,451~90,750	74,901~151,200	50,201~129,600	25.0
90,751~189,300	151,201~230,450	129,601~209,850	28.0
189,301~411,500	230,451~411,500	209,851~411,500	33.0
411,501~413,200	411,501~464,850	411,501~439,000	35.0
413,200 이상	464,850 이상	439,000 이상	39.6

자료: <http://www.jhinvestments.com>.

과세대상소득을 산출하는 방법으로는 일반법(General Method)과 간편법(Simplified Method)이 있다. 일반법은 근로자가 퇴직연금 납입단계에서 소득공제를 받지 못하고 세후소득으로 납입한 부담금이 있는 경우 이 적립금을 근로자의 순투자 원금액으로 보고 연금급여에서 차감하여 과세대상소득을 산출하는 방법이다. 여기서 순투자 원금액은 과세제외비율(예상수익 대비 투자금액) 방식을 이용하여 산출한다. 1996년 11월 19일 이후 개시되는 적격연금을 수령한 근로자가 75세 미만이거나 지급보증 연금수급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에는 간편법을 적용하며 이때에도 순투자 원금액을 연금급여에서 차감하여 과세대상소득을 산출한다. 순투자 원금액은 투자금액을 연금 가입자 나이에 기초하여 계산한 예상연금수령횟수로 나누어 산출한다.

② 연금 외 수령 시

연금과 같은 정기급여가 아닌 다른 형태로 수령하는 경우에도 과세대상소득을 총소득과 합산하여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동일하나 근로자의 출생연도에 따라 방식의 차이가 있다. 1936년 1월 이전에 출생한 근로자가 일시금(lump-sum distribution)을 수령하는 경우 10년 연분연승법(10-year tax option)이나 20%의 자본소득세를 선

택할 수 있다. 연금개시일 이전 세제적격퇴직연금에서 수령하는 지급액에 과세제외 금액을 차감하여 과세대상소득금액을 산출한다. 여기서 과세제외금액은 비정기급여 총수령액에서 연금계정 잔고 대비 원금의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다.

연금개시일 이전 세제비적격퇴직연금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급여액에서 과세대상 금액을 직접적으로 산출한다. 과세대상금액은 비정기적 급여와 비정기적 급여를 수령하기 직전의 순투자금액을 초과하는 적립금의 현재가치 중 적은 금액이 된다.

3) 개인연금의 과세제도

가) 개인연금의 종류

미국의 대표적인 개인연금 중 하나인 개인퇴직계좌(IRA)는 사용자 지원을 받는 퇴직연금에 가입하기 어려운 사람들을 위하여 만들어진 제도이다. 개인퇴직계좌의 종류로는 전통적 개인퇴직계좌(Traditional IRA)와 Roth 개인퇴직계좌(Roth IRA), SEP (Simplified Employee Pension) IRA, SIMPLE(Savings Incentive Match Plan for Employees) IRA 등이 있다. Traditional IRA는 납부·운용단계에서 소득공제해주고 수령단계에서 과세(EET)하며 59.5세 이전에 적립금 또는 수익금을 조기 인출할 경우 특별한 사유⁸¹⁾를 제외하고는 10%의 징벌적 벌금을 부과한다. 70.5세부터는 최소금액에 대한 강제 인출규정(RMD: Required minimum distribution)이 있어 70.5세가 되는 해는 다음 해 4월 1일까지 그 이후로는 12월 31일까지 연금을 인출해야 한다.

Roth IRA는 납부단계에서 과세하여 이자소득을 비과세(TEE)해주는 방식으로 납세자의 연령제한이 없으며 다른 연금제도에 가입되어 있고 소득이 중상위층 이상인 경우 유리하게 작용한다. Roth IRA는 70.5세 이후에도 추가적인 적립금 불입이 가능하며 최소금액강제인출규정(RMD)도 적용받지 않는다.

그밖에도 자영업자나 소규모 사업장을 위하여 SEP(Simplified Employee Pension)

81) 계좌 소유주가 사망하거나 장애 판정을 받은 경우, 세액 공제 대상이 되는 의료비 지출이 생긴 경우, 해직 등의 이유로 조기인출된 금액이 건강보험료로 사용될 경우, 대학 학비 등 고등교육비로 사용될 경우, 첫 번째 주택구입 자금으로 사용될 경우 최대 1만 달러까지, 법이 규정하는 대로 동일한 액수의 정기적 인출계획에 따를 경우, 60일 내 같은 은퇴플랜으로 옮길 경우(롤오버) 등.

IRA, SIMPLE(Savings Incentive Match Plan for Employees) IRA가 있다. SEP IRA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위해 자신의 연금플랜과 동일한 비율로 부담금을 적립해주는 방식으로 근로자가 추가적으로 부담금을 적립할 수는 없다. 주로 100인 이하의 소규모 사업장에서 도입하는 SIMPLE IRA의 경우 근로자가 부담금을 적립하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사용자가 근로자 연소득의 일정비율을 매칭하여 부담금을 적립해 준다.

나) 납부 단계

전통적 IRA는 일정한도 내에서 소득공제가 가능하며 퇴직연금 가입여부 및 신고유형에 따라 소득공제한도가 달라진다.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 납입부담금은 최대 5,500달러(2015년 기준)이며 50세 이상인 경우에는 최대 6,500달러(2015년 기준)이다. 다른 퇴직연금에도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소득공제 기준이 더 엄격해지며 신고유형에 따른 적립한도는 아래 표와 같다.

〈표 V-10〉 Traditional IRA의 적립한도

구분		수정총소득 (Modified AGI) ⁸²⁾	적립 한도
퇴직연금 제도 가입 시	독신, 세대주	\$61,000 이하	\$5,500(50세 이상, \$6,500)
		\$61,000~\$71,000	부분 소득공제
		\$71,000 이상	소득공제 불가능함
	부부합산신고, 적격미망인	\$98,000 이하	\$5,500(50세 이상, \$6,500)
		\$98,000~\$118,000	부분 소득공제
		\$118,000 이상	소득공제 불가능함
부부단독신고	\$10,000 이하	부분 소득공제	
	\$10,000 이상	소득공제 불가능함	
퇴직연금 제도 미가입 시	독신, 세대주, 적격미망인	제한 없음	\$5,500(50세 이상, \$6,500)
	부부합산신고, 부부단독 (배우자 퇴직연금 제도 미가입)	제한 없음	\$5,500(50세 이상, \$6,500)
	부부합산신고 (배우자 퇴직연금 제도 가입)	\$183,000 이하	\$5,500(50세 이상, \$6,500)
		\$183,000~\$193,000	부분 소득공제
		\$193,000 이상	소득공제 불가능함
	부부단독신고 (배우자 퇴직연금 제도 가입)	\$10,000 이하	부분 소득공제
\$10,000 이상		소득공제 불가능함	

자료: Saving-invest(2015).

Roth IRA의 경우 Traditional IRA와 같이 소득수준에 따라 적립한도가 다르게 적용되며 적립한도액은 동일한 수준이다. 즉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 납입부담금은 5,500달러(50세 이상, 6,500달러)이며 소득수준의 차이는 아래의 표와 같다.

〈표 V-11〉 Roth IRA의 적립한도

구분	수정총소득(Modified AGI)	적립 한도
부부합산신고, 적격미망인	\$183,000 이하	\$5,500(50세 이상, \$6,500)
	\$183,000~\$193,000	적립한도 감소
	\$193,000 이상	적립 불가능
독신, 세대주	\$116,000 이하	\$5,500(50세 이상, \$6,500)
	\$116,000~\$131,000	적립한도 감소
	\$131,000 이상	적립 불가능
부부단독신고	\$10,000 이하	적립한도 감소
	\$10,000 이상	적립 불가능

자료: Saving-invest(2015).

SEP IRA에 적립할 수 있는 부담금의 한도는 근로자의 총급여(최소 600달러, 최대 265,000달러, 2015년 기준)의 250%와 53,000달러(2015년 기준) 중 적은 금액으로 한다. 그리고 SIMPLE IRA에 적립할 수 있는 부담금의 한도는 12,500달러이며 50세 이상인 경우 3,000달러를 추가적으로 적립할 수 있다. 사용자는 근로자 연소득의 일정비율을 매칭하여 적립하며 매칭연금부담금(employer-matching contribution)인 경우에는 총급여의 3%, 비선택적연금부담금(non-elective contribution)인 경우에는 총급여의 2%를 추가적으로 적립한다.

다) 운용·수령 단계

수령 및 운용단계는 퇴직연금 과세제도에서 소개한 내용과 동일하며 Roth IRA의 경우에만 납입단계에서 이미 과세되었기 때문에 수령한 급부에 대해서는 비과세된

82) 수정총소득(Modified Adjusted Gross Income)이란 총소득에서 항목별 공제 후 산출된 조정총소득에 비과세 이자소득, 사회보장급여 등을 가감한 소득을 말한다.

다. 수령한 급여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60일 내에 다른 적격연금이나 IRA 계좌로 이전(Rollover)하는 경우에는 과세를 이연시킬 수 있다. 단, 10년 이상 매년 실질적으로 동일한 급여를 수령하거나, 근로자가 70.5세에 도달하여 최소 연금 급여요건의 충족을 위하여 수령하거나, 401(k) 제도의 적립한도를 초과하여 초과금을 돌려받는 경우 등에는 이전이 허용되지 않는다.

다. 일본

1) 연금제도

일본의 노후소득보장체계는 3층 구조로 나뉘어져 있으며 여러 번의 개혁과 조정을 통해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1층은 기초연금, 2층은 후생연금보험 및 특수지역층을 대상으로 하는 공제연금, 3층은 자발적 가입에 의한 기업연금(후생연금기금, 확정급여기업연금, 적격퇴직연금)으로 구성되어 있다. 하지만 이마저도 구별 없이 적용되기도 하며 일반적으로 1층과 2층은 공적연금, 3층은 사적연금이라 부른다.

가) 공적연금제도

① 기초연금

기초연금은 20세 이상 60세 미만인 전 국민을 대상으로 의무가입 형태로 운영되고 있으며 피보험자는 다음과 같은 3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가입유형은 가입자의 직업에 따라 제1호, 제2호, 제3호 피보험자로 나눌 수 있는데, 제1호 피보험자는 국내에 거주(외국인 포함)하는 20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으로써 다음 제2호, 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이다. 제2호 피보험자는 피용자연금제도에 관한 개별법상의 피보험자, 조합원 또는 가입자이다. 마지막으로 제3호 피보험자는 제2호 피보험자의 피부양 배우자로서 20세 이상 60세 미만인 자이다. 만약 60세 이상 65세 미만자로 피용자연금제도에 가입되어 있지 않거나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20세 이상 65세 미만 국

민인 경우에는 제1호 피보험자로 임의가입이 가능하다.

각 유형에 따라 납입하는 보험료(기여금)와 급부수준이 다르며 후생연금 보험료는 기초연금 보험료와 통합하여 징수한다. 제1호 피보험자의 보험료와 급부는 정액으로 매년 물가와 임금수준에 따라 조정된다. 2015년 기준 기초연금 보험료는 월 15,590엔이며 저소득 등의 이유로 보험료 납입이 어려운 경우에는 보험료가 면제되기도 한다. 제2호 피보험자는 기초연금과 후생연금보험에 모두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후생연금 보험료만을 납부하며 여기에 기초연금 보험료가 포함되어 있는 개념이다. 보험료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절반씩 부담하며 급부는 표준보수액에 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출한다. 마지막으로 제3호 피보험자는 보험료 부담이 없다.

제1호와 제3호 피보험자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의 급부는 노령, 장애, 사망에 대하여 지급하며 노령기초연금, 장애기초연금, 유족기초연금이라 한다.⁸³⁾ 노령기초연금 보험료를 10년(2015년 이전에는 25년 이상) 이상 납부한 경우 수급권이 생기며 65세부터 수령 가능하다. 노령기초연금액은 40년간 보험료를 납부하였을 경우 780,100엔(2015년 기준)이며, 이때 납부기간 480개월을 채우지 못하고 수령하거나 65세 이전에 조기수령하는 경우 비례적으로 감액되어 지급한다. 장애기초연금은 기초연금 가입 기간 중 병이나 부상에 의해 장애등급 1급 또는 2급에 해당하는 장애상태 판정을 받은 경우 납부기간에 관계없이 전액 수령가능하다. 2015년 기준 장애기초연금액은 1급 판정을 받은 경우 975,100엔, 2급 판정을 받은 경우 780,100엔을 지급한다. 유족기초연금은 기초연금 피보험자가 사망할 경우 가입자에 의해 생계를 함께하고 있던 유족(배우자 또는 18세 미만 자녀)이 납부기간과 관계없이 전액 수령이 가능하다. 단, 배우자에 대해서는 자녀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것을 요건으로 하며, 유족기초연금액은 아이가 1명인 배우자의 경우 1,004,600엔(2015년 기준)을 수령 가능하다.

제1호 피보험자에 대한 독자급부로 부가연금, 과부연금, 사망일시금 등이 있다. 부가연금은 정액 보험료 외에 부가 보험료(400엔, 2015년 기준)를 추가로 납입한 경우 노령기초연금에 더하여 부가연금(200엔×부가 보험료 납부 월수)을 수령할 수 있다.

83) 일본연금청(<https://www.nenkin.go.jp>).

과부연금은 노령기초연금의 수급자격기간을 충족한 남편(피보험자)이 65세 이전에 노령기초연금이나 장애기초연금을 수급하지 않고 사망한 경우, 10년 이상 혼인 관계에 있는 배우자에게 60세부터 65세까지 노령기초연금의 3/4인 금액을 지급하는 연금이다. 사망일시금은 보험료 납부기간이 36개월 이상인 남편(피보험자)이 65세 이전에 노령기초연금이나 장애기초연금을 수급하지 않고 사망한 경우, 생계를 함께하고 있는 유족에게 지급되는 연금(납부기간에 따라 120,000~320,000엔 수준)으로 과부연금과 택일이 가능하다.

제2호 피보험자에게는 지급되는 급부에는 기초연금에 더하여 노령후생연금, 장애후생연금 및 장애수당금, 유족후생연금이 있다. 그 외에도 보험료납부기간이 6개월 이상이거나 노령기초연금 수급자격기간을 충족하지 못한 외국인은 국내 주소를 소유하지 않게 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탈퇴 일시금을 수령할 수 있는데, 탈퇴 일시금은 보험료 납부 월수에 따라 달리 적용되며 아래 표와 같다.

〈표 V-12〉 탈퇴 일시금(2015년 기준)

(단위: 엔)

보험료 납부완료기간의 합계	지급액
5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46,770
12개월 이상 18개월 미만	93,540
18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140,310
24개월 이상 30개월 미만	187,080
30개월 이상 36개월 미만	233,850
36개월 이상	280,620

주: 보험료 납부 완료기간 = 전액 납부 월수 + (4분의 1 납부 월수) × 1/4 + (반액 납부 월수) × 1/2 + (4분의 3 납부 월수) × 3/4

자료: 일본연금청.

② 후생연금보험

후생연금보험은 후생연금보험법이 적용되는 사업장에서 상시고용되어 근무하고 있는 70세 미만인 자를 가입대상으로 한다. 보험료는 피보험자(근로자)와 사용자가 절반씩 부담하며 표준보수월액의 17.47%(2015년 4월 기준) 수준이다.

후생연금의 급부에는 노령후생연금, 장애후생연금, 유족후생연금이 있다. 노령후생연금은 피보험자가 노령기초연금의 수급요건을 만족한 경우 수령가능하며 급부는 전 기간 평균표준보수액에 급부승률과 가입 월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장애후생연금은 장애기초연금보다 장애요건을 더 넓게 적용하여 3급 장애에 대해서도 지급한다. 유족후생연금은 후생연금의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유족에게 지급되는 연금으로 연금액은 노령후생연금의 3/4 수준이다.

기초연금과 같이 보험료납부기간이 6개월 이상이나 기초연금 수급자격기간을 충족하지 못한 외국인인 국내 주소를 소유하지 않게 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탈퇴 일시금을 수령할 수 있으며 탈퇴 일시금은 보험료 납부 월수에 따라 달리 적용되며 아래 표와 같다.

〈표 V-13〉 탈퇴 일시금(2014년 4월 이후 기준)

피보험자 기간	지급액
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평균표준보수액×0.5
12개월 이상 18개월 미만	평균표준보수액×1
18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평균표준보수액×1.5
24개월 이상 30개월 미만	평균표준보수액×2.1
30개월 이상 36개월 미만	평균표준보수액×2.6
36개월 이상	평균표준보수액×3.1

주: 평균표준보수액 = 피보험자 기간의 각 월 표준보수월액과 표준 상여액의 합계/피보험자 기간의 전체 월수
자료: 일본연금청.

나) 사적연금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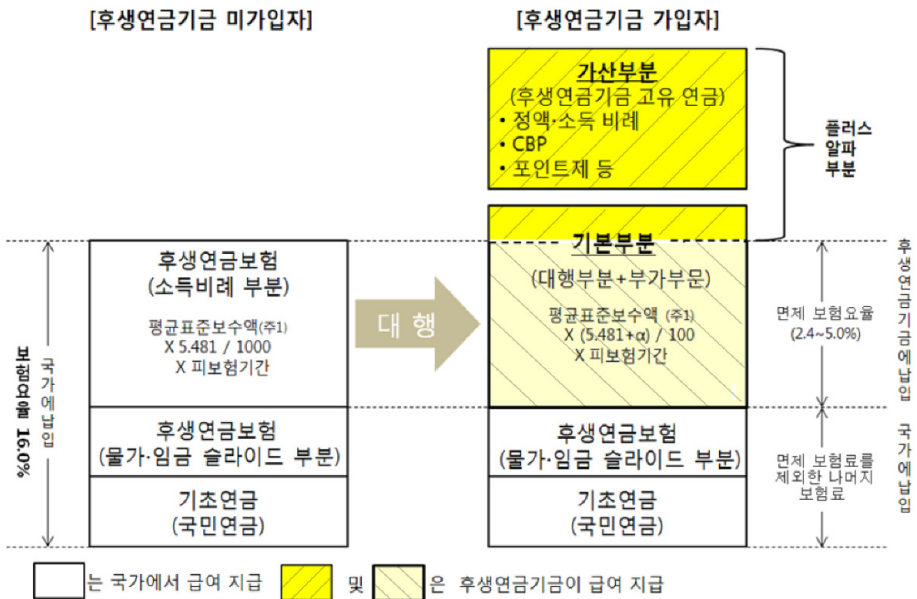
① 후생연금기금

후생연금기금은 공적연금과 퇴직연금의 중복 조정을 위해 시행된 퇴직연금제도로 후생연금보험의 보험료를 국가가 대신 납부(대행제도)하여 소득비례 공적연금의 일부 기능을 수행한다. 후생연금기금은 후생연금보험법이 적용되는 사업장으로 단독

형은 500명, 중소기업 등이 통합하여 설립한 경우에는 3,000명 이상을 설립요건으로 한다. 보험료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절반씩 부담하며 가산부분(플러스 알파)은 사용자가 부담하는 경우가 많다. 만약 기업이 플러스 알파를 추가적으로 적립하는 경우 면제보험료의 50% 이상 유지되는 범위에서 부담비율을 조정가능하다. 따라서 2.4~5%의 범위 내에서 근로자와 사용주가 균등부담할 수 있다.

후생연금기금의 특징 중 하나인 대행제도(contraction-out)는 기업이 대행부분의 50% 이상을 설계하고 여기에 추가하여 플러스 알파를 적립하는 형태이다. 아래 그림과 같이 후생연금기금에 가입한 근로자는 동 기금이 후생연금보험부분을 대행하고 있기 때문에 후생연금보험에 따로 가입할 필요가 없다. 즉, 후생연금보험(소득비례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 기금이 대신하여 급부를 지급하며 후생보험에서는 이 부분만큼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다. 기업은 대행급부 외에 플러스 알파부분을 10% 이상 설계하여 추가 납입할 수 있다.

〈그림 V-1〉 후생연금기금 운영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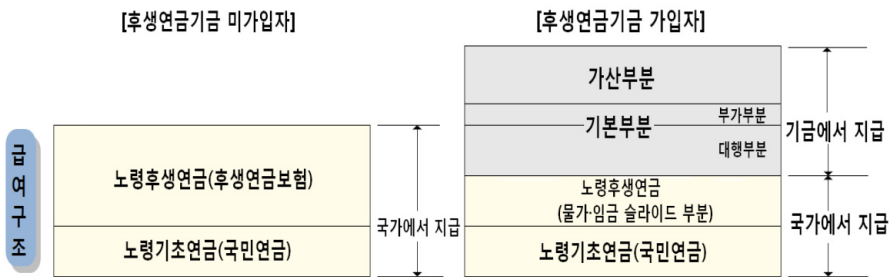


자료: 이상우 · 오병국(2012) 재인용.

하지만 이후 후생연금기금의 재정악화로 2002년 4월부터 대행부분을 다시 공적연금으로 전환할 수 있는 대행반상이 허용되어 현재 상당수의 기업들이 이를 이용하고 있다.

후생연금기금의 급부는 기본적으로 노령후생연금의 기본부분과 가산부분(플러스알파)에 근거하여 65세부터 지급이 시작되며 국가에서는 노령후생연금보험 외에 대행부분과 가산부분에서 대하여 급부를 지급한다. 이 중 기본부분 중 대행부분은 후생연금보험과 함께 지급이 시작되나 가산부분은 기업의 정년연령 등에 감안하여 지급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그림 V-2〉 후생연금기금 급여지급구조



자료: 이상우 · 오병국(2012) 재인용.

② 확정급부기업연금

확정급부기업연금은 2002년 4월부터 확정급부기업연금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후생연금기금의 대행부분 외에 플러스 알파부분에 대하여 지급의무를 수행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확정급부기업연금은 규약형과 기금형으로 가입이 가능하며 가입에 따라 연금관리와 책임의 주체가 달라지는데, 적립의무 및 급여지급에 대한 책임은 기금형의 경우 기금이, 규약형의 경우 사용자가 부담한다.

연금급여액은 사전에 결정되어 있으며 결정 시 연금지급 보증기간은 최대 20년까지로 선택하여 설정한다. 기업이 급부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고 있기 때문에 최대 기간을 20년까지로 설정할 경우 장수리스크에 대한 부담을 어느 정도 완화할 수 있다.

또한 급여방식을 일시금이 아닌 5년 이상의 연금형태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퇴직급여 지급사유 발생 시 연금수급 5년이 지난 후에 일시금으로도 수급 가능하다.

③ 확정기여연금

확정기여연금은 가입자가 미리 정해진 보험료를 납부하고 연금자산을 스스로 운용·적립하여 퇴직 후 수령하는 방식으로 운용실적에 대한 리스크는 가입자에게 있다. 확정기여연금의 가입자격은 근로자에게 한정하지 않고 소득이 있는 자는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동 연금의 종류로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위해 납입하는 기업형과 국민연금기금연합회가 관리·운영하여 기업연금대상자가 아닌 자가 개인단위로 가입하여 스스로 납입하는 개인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기업형의 경우 기초연금 제2호 피보험자인 근로자가 가입대상이 되며 보험료는 사용자가 납입한다. 약관이 정한 경우 근로자도 보험료 납입이 가능하며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적립금의 운용을 지시한다.

개인형의 경우 기초연금 제1호 피보험자에 해당하는 자영업자 등 또는 기초연금 제2호 피보험자에 해당하지만 기업형 연금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를 대상으로 한다. 이는 기업형과 달리 사용자가 보험료를 납입할 수 없으며 오직 근로자만이 보험료를 납입할 수 있다.

2) 과세제도

가) 공적연금제도

① 납부 단계

피보험자가 낸 보험료는 전액 사회보험료로 취급되어 소득공제되며, 생계를 함께 하는 배우자나 자녀가 보험료를 낸 경우에도 공제가 가능하다. 뿐만 아니라 후생연금 기금에서 부담한 대행부분에 대해서도 모두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확정급부기업연금의 경우 사용자가 보험료를 부담하지만 근로자도 일부 부담이 가능하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보험료 공제가 아닌 생명보험료 공제에 해당하며 생명보험료 공제는 보장성보험, 건강·간병보험, 연금보험으로 구분되며 각각 한도 금액이 다르게 설정되어 있다.

〈표 V-14〉 확정급부기업연금의 근로자 보험료 소득공제(2015년)

가입기간	연간보험료	공제액
2012년 1월 1일 이후 계약	20,000엔 이하	납입보험료 등의 전액
	20,000엔~40,000엔 이하	납입보험료 등×1/2+10,000엔
	40,000엔~80,000엔 이하	납입보험료 등×1/4+20,000엔
	80,000엔 이상	40,000엔
2011년 12월 31일 이전 계약	25,000엔 이하	납입보험료 등의 전액
	25,000엔~50,000엔 이하	납입보험료 등×1/2+12,500엔
	50,000엔~100,000엔 이하	납입보험료 등×1/4+25,000엔
	100,000엔 이상	50,000엔

주: 납입보험료는 당해 연도에 납입한 보험료에서 잉여금과 반환금을 차감한 금액임.
자료: 일본 국세청.

사용자가 납입한 보험료는 사업상 경비로 인정되어 법인세법상 손금 또는 필요경비로 산입되며 근로자의 급여로 보지 않는다. 다만, 확정기여연금(기업형)인 경우 납입한도가 정해져 있으며 2015년 기준으로 다른 기업연금이 있는 경우 월 27,500엔, 다른 기업연금이 없는 경우 월 55,000엔을 한도로 한다. 확정기여연금(개인형)인 경우 2015년 기준으로 자영업자 등은 월 68,000엔, 다른 기업연금이 없는 근로자의 경우 월 23,000엔을 한도로 한다.

② 운용 단계

사용자는 기업연금 운용 시 운용차익에 대하여 특별법인세가 과세되는 경우가 있는데, 보통 특별법인세의 과세대상은 운용이익이 아닌 적립금을 대상으로 하며 세율은 1%대 수준이다. 후생연금기금의 경우 적립금 중 대항부분의 3.23배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1.173%의 특별법인세가 과세되며 많은 경우 과세한도에 미달하므로 실질적으로는 비과세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확정급부기업연금의 경우 적립금 중 근로자 납입분을 제외한 부분에 대하여 1.173%의 특별법인세를 과세하며 확정기여 연금의 경우 역시 적립금에 대하여 1.173%의 특별법인세를 과세한다.

사용자와 달리 근로자가 확정급부기업연금에 보험료를 납부하여 운용이익이 발생한 경우 본인 출연분에 대한 적립금은 계산상 소득공제 된다.

③ 수령 단계

일반적으로 연금에 대해서는 근로자의 급여소득이 아닌 잡소득으로 구분하며 공적연금 등 관련된 잡소득은 수입금액에서 공적연금 등 공제액을 차감하여 계산한다. 여기서 잡소득은 '공적연금 등에 관련된 잡소득'으로 그 외의 잡소득과는 명확히 구분하고 있으며 실질적으로 독립적인 소득에 해당한다. 잡소득이 되는 주요 공적연금은 국민연금법, 후생연금보험법, 공무원 등 공제조합법 등의 규정에 의한 연금, 과거의 근무에 의해 회사 등으로부터 지급되는 연금, 외국의 법령에 근거한 보험 또는 공제에 관한 제도로 위에 해당하는 법률의 규정에 의한 사회보험 또는 공제 제도와 유사한 것 등으로 정의 된다.⁸⁴⁾ 공적연금을 수취한 피보험자는 수입금액에서 공적연금 등 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에 5.105%(2015년 기준)를 곱하여 원천징수한다.

즉, 공적연금을 연금으로 수령 시 잡소득으로 과세하고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경우에는 퇴직소득세로 과세한다. 다만 확정급부기업연금의 경우에는 근로자 부담분을 제외한 금액을 과세대상으로 본다. 공적연금 등의 잡소득은 65세를 전후하여 달리 적용되며 공적연금 등의 수입 금액의 합계액에 수입 금액 수준별 비율을 곱한 후 공제액을 차감하여 산출하며 자세한 사항은 아래 표와 같다.

84) 양인준 외(2014).

〈표 V-15〉 잡소득 금액의 계산(2015년 기준)

(단위: %)

연령	공적연금 등의 수입 금액의 합계액(A)	비율(B)	공제액(C)
65세 미만	700,000엔 이하	0	-
	700,000엔~1,300,000엔 미만	100	700,000엔
	1,300,000엔~4,100,000엔 미만	75	375,000엔
	4,100,000엔~7,700,000엔 이하	85	785,000엔
	7,700,000엔 이상	95	1,555,000엔
65세 이상	1,200,000엔 이하	0	-
	1,200,000엔~3,300,000엔 미만	100	1,200,000엔
	3,300,000엔~4,100,000엔 미만	75	375,000엔
	4,100,000엔~7,700,000엔 이하	85	785,000엔
	7,700,000엔 이상	95	1,555,000엔

주: 잡소득 금액 = $A \times B - C$

자료: 일본 국세청.

일시금으로 지급되어 퇴직소득세가 과세된 경우 원천징수되기 전의 수입금액에서 퇴직소득 공제액을 차감한 후 1/2를 곱하여 퇴직소득금액을 산출하게 되는데 퇴직소득 공제액은 근속연수에 따라 달리 적용된다.

〈표 V-16〉 퇴직소득 공제액(2015년 기준)

근속연수	퇴직소득 공제액
20년 이하	400,000엔×근속연수(800,000엔 미만인 경우에는 800,000만 엔)
20년 이상	8,000,000엔 + 700,000엔×(근속연수 - 20년)

자료: 일본 국세청.

유가족에게 지급되는 공적연금은 일반적으로 과세되지 아니하나 일부 연금에 대해서는 연금소득세가 아닌 상속세가 과세된다. 국민연금법, 후생연금보험법, 연금법, 구 선원보험법, 국가공무원공제조합법, 지방공무원 공제조합법, 사립학교교직원공제법, 구 농림어업단체직원공제조합법에 따라 유가족에게 지급되는 연금은 비과세된다. 다만, 일부 연금에 대하여는 상속세 과세대상이 되며, 연금소득에 대하여는 과세

하지 아니한다.⁸⁵⁾ 과세대상 연금소득은 다음과 같다. 확정급부기업연금법 제3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확정급부기업연금에 관련되는 규약에 따라 지급되는 연금, 일본 소득세법 시행령 제73조 제1항에 규정하는 특정 퇴직금 공제 단체가 실시하는 퇴직금 공제에 관한 제도에 따라 지급되는 연금, 일본 법인세법 부칙 제20조 제3항에 규정하는 적격 퇴직연금 계약에 따라 지급받는 퇴직연금으로부터 수령하는 연금소득은 과세된다.

사적연금을 연금으로 수령한 경우 피보험자(연금수령자)와 보험료부담자가 누구냐에 따라 과세가 달라진다. 보험료를 부담한 자가 연금을 수령한 경우 이는 공적연금 등 이외의 잡소득으로 분류되어 소득세가 과세된다. 이 경우 연금액에서 연금에 해당하는 보험료가 차감된 금액에 10.21%(2015년 기준)를 곱하여 원천징수한다. 만약 보험료를 부담한 자와 연금을 수령한 자가 다른 경우 연금 수령자에게 연금수급권이 증여된 것으로 간주하여 증여세를 과세한다.

유가족에게 지급되는 사적연금은 피보험자(연금 수령자) 및 보험료 부담자, 연금수급권자가 누구냐에 따라 과세가 달라진다. 피보험자와 보험료 부담자가 동일하고 연금수급권자가 다른 경우 이는 상속에 의해 취득한 것으로 간주되어 상속세가 과세된다. 이와 달리 피보험자와 보험료 부담자가 다르고 또 다른 유족이 연금수급권자인 경우 이는 증여에 의해 취득한 것으로 간주되어 증여세가 과세된다. 매년 지급받은 연금은 처음 2년 동안 전액 비과세되며 2년 이후부터는 과세금액이 매년 증가하는 방식으로 과세된다. 연금액에서 연금에 해당하는 보험료가 차감된 액수에 10.21%(2015년 기준)를 곱하여 원천징수한다.

85) 양인준 외(2014).

4. 소결

우리나라의 연금세제는 매우 자주 바뀌고 그 체계 역시 매우 복잡해서 일반국민이 쉽게 이해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국민의 연금에 대한 접근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연금세제의 단순화가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노후소득 보장 체계는 공적연금, 준공적연금 그리고 사적연금으로 3원화되어 있으며 각각의 연금세제의 납입기, 수령기 세제가 모두 상이하여 이용자의 입장에서는 모든 세제상의 특징을 숙지하고 본인에 맞게 제도를 이용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앞서 해외사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영국, 미국 등의 경우 연금세제가 우리나라에 비해 비교적 단순한 세제를 운영하고 있었다. 연금세제는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도구로서 계층별로 차별화된 노후소득보장기능을 제공하기 위해 어느 정도의 복잡성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나, 우리나라의 연금세제는 계층별 연금가입유인 측면에서의 장점보다는 제도의 복잡성으로 인한 연금상품 접근성을 저해하는 부정적 측면이 더 큰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계층별로 필요한 세제를 제공하면서도 복잡성으로 인한 효용이 적은 부분은 단순화한 세제가 필요하다. 한편으로는 연금저축에 대한 세제지원이 전체 저축의 총량을 증대시키지 못한다는 주장도 존재하나, 현재 우리나라의 노후빈곤율과 연금자산의 연금화 수령 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연금과세체계를 고려할 때 생활자금 등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높은 중·단기 저축을 연금수령을 위한 연금으로 저축하도록 유도하는 것만으로도 노후빈곤율 개선 및 사회적 편익의 증대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사적연금 기여금 납입 시 세제혜택 방식이 세액공제로 전환된 이후 세제의 일관성이 저해되었으며 사적연금가입이 감소했다는데 주목할 필요가 있다. 세액공제 방식 도입으로 인해 EET의 일관성이 저해되었으며, 사적연금의 주요 대상이며, 세제혜택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중산층 및 저소득층의 연금가입유인이 줄어들게 되었는데 이러한 부분 역시 연금가입 및 납입 확대라는 정책목표를 이루면서 제도의 일관성과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고민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⁸⁶⁾

마지막으로 소득계층에 특화된 연금세제 정책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 근

로소득자 중 면세자 비율이 거의 절반에 이르는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연금세제 혜택은 사적연금 가입동기를 유발하지 못한다. 따라서, 연금세제 혜택은 영국, 미국, 일본처럼 특정계층을 타겟으로 하여 특화된 세제혜택 및 보조금 지급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특히 여성노인빈곤율이 높은 우리나라의 상황⁸⁷⁾을 고려하여 일본에서 시행하고 있는 배우자의 공적연금 납입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 부여 도입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미국의 Catch up plan과 같은 연금수요의 변화에 따른 제도 및 영국의 NEST와 Lifetime ISA 혹은 독일의 리스터 연금과 같이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의 과감하고 탄력적인 연금가입 유인 정책 도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86) 정원석·강성호(2015a).

87) 통계청(2012), 「장래가구추계: 2010년~2035년」.